

##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

제정 2013. 10. 21

1차 개정 2016.0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 제52조의 4와 동 시행규칙 제140조와 대학원 학칙 제2조 및 연합신학전문대학원 학칙 제3조, 벤처대학원 학칙 제3조,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칙 제3조에 의한 학사·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6)

**제2조(정의)** ①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함은 본교 대학 재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에 이어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위 간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연계학기라 함은 연계과정의 7학기(4학년 1학기), 8학기(4학년 2학기)로서 학사과정 교과목과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병행하여 이수함으로써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시키는 학기를 말한다. (개정 2024. 8. 26)

**제3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8)

1. 학사과정: 4년(8개 학기)
2. 석사과정: 1년(2개 학기)

**제4조(지원자격)** ①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1.19., 2019.10.28., 2024. 8. 26)

1. 학사과정 6개 학기(3학년 2학기) 이수자로서 해당과정의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단, 학사과정 편입생은 3학년 2개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이수학점의 50%이상을 취득한 자)
2. 학사과정 6개 학기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단, 학사과정 편입생은 3학년 2개 학기)
3.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석사과정 지원학과는 학사과정의 단일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불허한다.

③ 학사과정 4학년 1학기부터 연계과정 종료 시까지 본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교환 학생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10.28)

**제5조(지원서류)** 연계과정 지원자는 소정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8)

1. 연계과정 지원서(별지서식 1) 1부.
2. 학부(과)장의 추천서(별지서식 2) 1부.
3. 학업계획서(별지서식 3) 1부.
4. 성적증명서 1부.

**제6조(선발시기 및 방법)** ① 연계과정 학생모집은 연계학기 개시 60일 전에 공고하고 매학기 말까지 1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정원에 미달될 때는 추가모집하거나 미달된 정원을 정시모집으로 돌릴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과정 재학 중 성적, 학부(과)장 추천서, 학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하며, 필요시 면접전형을 시행한다. 종합적인 평가 및 면접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28.)

③ 대학원장은 연계과정 신청자에 대한 전형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신설 2022. 2. 14.)

- ④ 외국인이 연계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선발한다. (항 변경 2022. 2. 14.)

**제7조(모집단위와 모집인원)** ① 연계과정의 모집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한하며, 특수대학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2. 8. 25.)

- ② 연계과정 모집단위는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학과(간호학과 제외)로 한다. 다만, 학과의 사정에 따라 모집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6.01.19., 2019.10.28., 2022. 8. 25.)

- ③ 연계과정의 모집인원은 각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8. 25.)

- ④ 건축학과는 시기와 여건이 갖춰지면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규정을 적용한다.

- 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6호·7호 또는 12의 2호에 해당하여 본교에 입학한 자나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은 제3항에 따른 연계과정 모집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22. 8. 25., 개정 2023. 2. 6.)

**제8조(지도교수)** 대학원장은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발된 학기 초에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제9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석사과정 교과목을 포함하여 매학기 최대 2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 ② 연계과정 학생은 연계학기 재학 시 학사과정 교과목 이외에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석사과정 교과목을 병행하여 이수하되, 매학기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 ③ 연계과정 학생이 연계학기에 이수한 석사과정 교과목은 학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과정 재학 시에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0조(연계과정 학생의 학사학위 수여)** ① <삭제 2019.10.28>

- ② 연계과정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연계과정을 탈락한 것으로서 8학기(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01.19)

1. 석사과정 등록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2. <삭제 2019.10.28>

3. <삭제 2019.10.28>

③ <삭제 2019.10.28.>

- ④ 연계과정 학생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확인서(별지 서식 6)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14., 개정 2024. 8. 26)

1. <삭제 2024. 8. 26>

- ⑤ 연계과정 학생은 당해연도 신입학 전형 일정에 따라 원서접수를 해야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학원 입학을 허가한다. (항 변경 2022. 2. 14., 개정 2024. 8. 26)

**제10조2(대학원 등록 및 입학)** ①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석사과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 첫 학기와 두 번째 학기는 질병과 입대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휴학이나 자퇴를 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4. 8. 26]

**제11조(연계과정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계과정 이수자격을 취소한다.

1. 석사과정 진입 이전에 연계과정을 포기한 자. (별지서식 4) (개정 2019.10.28)

2. 8학기까지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석사과정 진입(통상 4학년 2학기)전에 석사과정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 (개정 2019.10.28)

② <삭제 2019.10.28>

**제12조(특전)** 연계과정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한다.

1. <삭제 2019.10.28>
2. 석사과정 입학시험 면제(무시험 특별전형).
3. 학사과정 재학 중 연구조교 임용기회 부여.
4. 학사과정 재학 중 각종 연구프로젝트 참여기회 부여.
5. 석사과정 입학금 면제.

**제13조(준용규정)** ①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석사과정 진입 후에는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과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1.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적용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제2조2항 및 제4조1항의 적용은 학사과정 3학년 1학기부터 허용한다.

**부칙(2023.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M.Div.3년과정)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제2조2항 및 제4조1항의 적용은 학사과정 3학년 1학기(5개 학기) 이수자도 허용하며, 3학년 2학기부터 연계학기를 할 수 있다.

③ 2023학년도 학사과정 편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④ 제10조의 석사과정 진입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별지서식 1] (개정 2019.10.28., 2022. 2. 14.)

## 20 학년도

### 호서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 학부생 3학년 2학기부터 작성가능

사진 (3cm x 4cm)	소속	대학	학과(부)	전공
	지원학과	일반대학원	학과	
	성명 (국문)		성명 (영문)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핸드폰)	
	주민번호	-	이메일(E-mail)	

학점 이수계획	※ 학과(부) 재학 중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 취득 등 학점이수계획 중심으로 작성
------------	--

위와 같이 호서대학교 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호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제출서류 : 1.학과(부)장 추천서 2.학업계획서(석사과정) 3.성적증명서(학사과정 3학년 2학기까지)  
4.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격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 제4조)

- ① 학사과정 6개학기(3학년 2학기) 이수자로서 해당과정의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 ② 학사과정 6개학기의 매 학기 평점평균이 3.2이상인 자
- ③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④ 석사과정 지원학과는 학사과정의 단일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에 한하며, 복수지원 불가
- ⑤ 학사과정 3학년 2학기부터 연계과정 종료 시까지 본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교환학생 등은 지원 불가
- ⑥ 연계과정 모집인원은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20% 이내

[별지서식 2]

## 학 · 석사 연계과정 학업계획서

지원학과	일반대학원	학과	학번	
소속	대학	학과(부)	전공	성명

### 연구 계획

※ 석사과정 진학 후 전공에 대한 학습 및 연구계획 등을 작성

---

※ 진학후의 학업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기술하십시오.

(항목은 예를 들어, 자기소개, 진학동기, 석사학위 논문요약, 앞으로의 연구계획 내용 등.)

※ 기술하는 항(項)마다 그 첫머리에 항목명을 적고 붉은 선으로 밑줄을 그어 주시고, 항 사이는 띄어주십시오.

※ 총 2페이지를 넘지 않게 작성해 주십시오.

---





[별지서식 5] <삭제 2024. 8. 26>

[별지서식 6] (신설 2024. 8. 26)

##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확인서

### 1. 인적사항

소속	대학		학부·과·전공
성명		학번	
학·석사연계과정 선발학기		20년 학기	
졸업예정 년월		20년 월	

### 2. 이수현황

취득학점		평점평균		이번 학기 신청학점		총 이수학점	
		전체	전공				
학부	학점	/4.5	/4.5	학부	학점	학부	학점
대학원	학점			대학원	학점	대학원	학점
계				계		계	

상기와 같이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증 임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학과(부)장 : (인)

호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